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2021년 1월 1일

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85호

#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규정 일부 개정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직원 채용의 결격사유 중 직원의 성범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.

제83조 징계사유의 시효 중 채용비리의 시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